

담양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
「담양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5. 8. 19.

담양군의회 의장



1. 조례명 : 담양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

2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는 담양사랑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필요시 유효기간의 연장만을 규정하고 있으나, 소비기한이 정해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류로 신청하는 경우 등 유효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원활한 지역화

폐 유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담양사랑 상품권의 유효기간 조정에 관한 사항(안 제4조제3항)

- (개정) 군수는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.

4. 입법예고 기간 : 2025. 8. 19. ~ 8. 24.(5일간)

5. 의견제출

○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 :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

-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

- 전화 : 061-380-3507~8(FAX 061-380-3590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전화, FAX, 직접방문, 우편

6. 조례안 : 붙임 참조

□ 의견제출 서식

의견서		
1. 조례안	담양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	
2. 의견	관련조문	의견
3. 기타		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 2025년 8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(전화 :) 성명 (서명 또는 인)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		

담양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담양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단서 중 “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효기간을”을 “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상품권의 발행) ①·②(생략) ③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. 다만, 군수는 <u>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u>	제4조(상품권의 발행) ①·②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, ----- <u>상 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----- -.</u>